

의안번호	제 2019 - 8호
보 고 연 월 일	2019. 3. 25. (제93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

# 목 차

<b>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b> .....	<b>4</b>
<b>II. 전문위원 개임 및 위촉장 수여식 개최</b>	
1. 전문위원 개임 .....	5
2. 신임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	8
<b>III. 양형위원회 제11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b>	
1. 개요 .....	9
2. 참석 현황 .....	9
3. 회의 내용 .....	9
4. 자문의견 요약 .....	9
<b>IV.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4차 공청회 결과 보고</b>	
1. 공청회 개요 .....	12
2. 사회자,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	12
3. 공청회 결과 요약(지정토론 요지) .....	13
<b>V.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b>	
1. 개요 .....	16
2.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에 관한 회신 의견 .....	17

---

**VI.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  
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1. 개요 .....	31
2. 관련 규정 .....	31
3. 공개 방법 .....	32
4. 추진 일정 .....	32

**VII. 2019년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추가 제작 및 오픈 .... 33**

**VIII. 新양형기준시스템 오픈 ..... 44**

**IX. 각종의견 접수 및 처리**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	46
2. 서면질의 등 민원 및 회신 .....	48

별지 ..... 신임전문위원 프로필



##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 회의	제124차	2019. 3. 11. 16:00	○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 준안에 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 검토

## II. 전문위원 개임 및 위촉장 수여식 개최

### 1. 전문위원 개임

#### 가. 개요

- 2019. 2. 11.자로 차호동 전문위원, 2019. 3. 6.자로 김희연 전문위원, 2019. 2. 26.자로 손철우, 전휴재, 송오섭 전문위원 각 임기만료
-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위원 위촉

#### ◆ 관련 규정 ◆

##### 양형위원회규칙 제8조 (전문위원)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 나. 고려사항

- 연구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분위기 쇄신
  - 종전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제1, 2, 3, 4, 5기 양형기준 수정 및 제6기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업무 수행
- 정기적인 업무수행 평가를 통해 전문위원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 그동안의 전문위원의 연구 성과와 활동 내역을 객관적으로 검토·평가하여 개선 방안 모색
- 전문위원 선정 원칙의 반영
  -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강화
  - 전문위원 연령 및 전문성 고려

- 다양한 전공분야 안배
- 추천 기관 또는 위원 의견 존중

## 다. 위촉 내역

### (1) 신규 위촉

- 최승원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2019. 2. 27.자)
- 김호용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2019. 2. 27.자)

※ 신임 전문위원의 자세한 경력은 [별지]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참조

### (2) 연임 위촉

- 손철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2019. 2. 27.자)
- 차호동 대검찰청 검찰연구원(2019. 2. 12.자)
- 김희연 변호사(2019. 3. 7.자)



라. 전문위원 구성

구분	성명	기수	소속	직위	최초위촉일
법원	손철우	제25기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18.02.27.
	최승원	제30기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19.02.27.
	김호용	제36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19.02.27.
검찰	김찬중	제24기	대검찰청 검찰연구원	부장검사	18.07.23.
	차호동	제38기	대검찰청 검찰연구원	검사	18.02.12.
변호사	범현	제30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0.08.20.
	김희연	제41기	김희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17.03.07.
교수/ 전문가	권상진	제14회 군법무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군법무관	18.07.23.
	강수진	제24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05.16.
	한상규	제24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05.16.
	김혜경	해당없음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15.05.16.
	이진국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05.16.
	최준혁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08.20.

## 2. 신입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일 시: 2019. 3. 25.(월) 16:00
- 장 소: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위촉장 수여: 양형위원회 위원장
- 위촉대상자: 최승원, 김호용 전문위원

### III. 양형위원회 제11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 1. 개요

- 일 시: 2019. 3. 18.(월) 16:00 ~ 18:00
- 장 소: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2. 참석 현황

- 위원장, 상임위원, 운영지원단장
- 자문위원 8인(고문현, 서창록, 오미영, 이상수, 홍은희, 김세형, 최은순, 장영민)

#### 3. 회의 내용

- 명예훼손, 유사수신 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 설명
- 자문의견 청취

#### 4. 자문의견 요약

##### 가. 명예훼손범죄

##### (가) 쟁점

- 출판물 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가중영역의 권고형량범위를 상향할지 여부
- 현행 안은 가중영역의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8월 ~ 2년6월’

##### (나) 자문의견

- **상향해야 한다는 견해(홍은희, 김세형, 최은순, 장영민)**
  - 출판물 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가 한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경우의 피해가 광범위함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되어

가중영역이 적용되는 경우의 설정 형량범위(8월 ~ 2년6월)는 지나치게 낮음

○ 양형기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서창록, 오미영)

- 명예훼손범죄 권고형량범위의 과도한 상향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
- 가중영역의 상한을 3년으로 할 경우 기준이 되는 일반상해의 가중영역 상한(2년6월)보다 가중영역의 상한이 높게 설정되는 문제점이 발생
- 2009. 1. 1.부터 2017. 12. 31.까지 실무에서 징역 2년을 초과하는 형량을 선고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함

## 나. 유사수신행위범위반범죄

### (가) 쟁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의 정의규정을 수정할지 여부
- ‘총 피해액(총 수신액에서 투자자에 대한 환급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약 2/3 이상의 금액에 관해 투자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거나 투자자의 피해가 회복 또는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로 정의함

### (나) 자문의견

- 총 유사수신통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김세형, 홍은희, 오미영, 최은순)
  - 유사수신행위범위는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대규모 사건에서 피해자별로 일일이 환급액 및 이를 총액에서 공제한 액을 산정하고 다시 여기서 2/3을 넘는 피해회복을 하였는지 가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임(공소사실에는 유사수신통액이 기재되고, 이 금액이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피해회복 여부를 따지는 것이 적정함).
  - 사기죄의 경우 피해회복 정도는 ‘손해액의 약 2/3’인데, 여기서 손해

액은 전체 편취액을 기준으로 2/3 여부를 평가하지 그 중 일부가 대가로 지급되었는지를 고려하여 다시 그 차액의 2/3를 기준으로 피해회복 정도를 평가하지 않는 것과 대비할 때 형평에 부합하지 않음

- 피해회복 정도를 환급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유사수신범죄 과정에서 수당 등 명목으로 전혀 환급하지 않은 피고인을 더 보호하는 이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양형기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이상수)

-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한 유사수신범행의 특성을 감안할 때, 수신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2/3 이상의 요건이 쉽게 충족될 여지가 있음
- 환급액을 공제한 실제 피해액을 기준으로 처벌불원 여부를 가리는 것이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 보다 부합함

## IV.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4차 공청회 결과 보고

### 1. 공청회 개요

- 일시: 2019. 2. 11. 14:00~18:00
- 장소: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중회의실
- 주제: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 기준안
- 참석자: 총 50여 명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양형위원: 천대엽(상임위원), 김후곤, 고연금, 이주원, 원혜옥 위원
  - 전문위원: 손철우, 전휴재, 송오섭, 김찬중, 차호동, 범현, 김혜경, 한상규, 권상진 위원
  - 일반시민, 기자, 변호사, 법원 관계자 등

### 2. 사회자,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 사회자: 천대엽 상임위원
- 발표자: 손철우 수석전문위원
- 명예훼손범죄 지정 토론자
  -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최정민(변호사)
-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지정 토론자
  - 이기수(전남대학교 교수)
  - 정관영(변호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지정 토론자
  - 안성훈(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최재혁(변호사)

### 3. 공청회 결과 요약(지정토론 요지)

#### 가.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 명예훼손범죄는 개별 피해자와 상황에 따라 해악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특성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허위사실 공표가 공인이거나 공적사안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감경적) 양형요소에 반영하자는 의견(홍성수 교수)
-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적극적인 대응이나 사회의 토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허위사실이 교정된 경우에는 감경요소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홍성수 교수)
- 범행수단 및 상대방과 관련하여, 전과가능성 및 표현의 범위, 크기, 반복성 등을 양형인자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홍성수 교수)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의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한 경우에 이를 가중요소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의견(홍성수 교수)
- 상관 명예훼손죄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양형인자보다는 소유형으로 추가하자는 의견(최정민 변호사)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는 경우를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로 추가하자는 의견(최정민 변호사)
- 인터넷에 글이 게시되어 다수인이 조회하거나 유포된 경우 가중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최정민 변호사)

#### 나. 유사수신행위범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 특별감경인자로 규정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단순가담’의 적용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이기수 교수)

- ‘처벌불원’을 일률적으로 감경요소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기수 교수)
-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인 ‘단순가담’과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는 제한적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기수 교수)
- 지금까지 유사수신행위범위반범죄의 양형이 다소 약했다는 지적과 이번에 설정된 양형기준 가중영역의 권고형량이 적정하다는 의견(정관영 변호사)
- 유사수신행위범위반범죄의 유형을 조직적 범행과 비조직적 범행으로 구분한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정관영 변호사)

#### 다. 전자금융거래범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 양형기준안이 일반적 범행과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을 구분하여 유형분류하고 그에 따른 형량범위를 설정한 것은 적정하다는 의견(안성훈 연구위원)
- 특별가중인자 중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는 조직적 범행에 한정하지 말고 모든 유형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안성훈 연구위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다른 유형의 범죄도 양형기준 설정대상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최재혁 변호사)
- 유형분류와 관련하여 영업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을 조직적 범행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같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최재혁 변호사)



- 생계형 범죄를 감경인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그 범위도 너무 넓다는 의견(최재혁 변호사)
- 현재 실무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이 다소 높다는 의견(최재혁 변호사)

## V.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 1. 개요

: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하여 양형위원회규칙 제11조에 따라 대법원, 국회,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회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가. 대상 기준안

- 전문위원단 검토 내용을 기초로 양형위원회 제92차 회의(2019. 1. 14.)에서 의결한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나. 조회 기간

- 2019. 1. 15. ~ 2019. 2. 25.

#### 다. 회신 기관

##### ○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

- 43개(국회 4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5개 기관이 회신, 조회 대상 기관이 아닌 1개의 기관이 회신(사단법인 오픈넷)
-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단법인 오픈넷

##### ○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45개(국회 4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5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46개(국회 5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5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라. 회신자료

- 별첨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 와 같음

## 2.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회신 의견 종합

### ◆ 명예훼손 양형기준안 회신 의견

#### 가. 대법원

- 명예훼손 모욕죄에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서 혐오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별도의 가중요소로 분류하면 좋겠음.

#### 나. 법무부

- 형량범위
  - 명예훼손 범죄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명예훼손	-6월	4월-1년	6월-1년6월
2	출판물 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8월	6월-1년4월	8월-2년6월

- ▶ 출판물 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가 한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점, 인터넷 등을 이용한 경우의 피해의 광범위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되어 가중구간이 적용되는 경우의 설정 형량범위(8월-2년6월)는 과경함
- ▶ 2유형 가중구간의 형량범위를 '1년 -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 고려함이 상당

#### ▪ 모욕 범죄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모욕	-4월	2월-8월	4월-1년
2	상관모욕	-6월	4월-10월	6월-1년2월

- ▶ 특별한 의견 없음

○ 양형인자

▪ 명예훼손 범죄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li> <li>○ 미필적 고의</li> <li>○ 전과가능성이 낮은 경우(2유형)</li> <li>○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균형법상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li> <li>○ 자수</li> <li>○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ul>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li>○ 전과가능성이 낮은 경우(1유형)</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ul>

- ▶ 현행 설정안의 가중요소 관련, '이종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만 포함되어 있으나 (1) 벌금형 선고의 비중이 높은 명예훼손 범죄군의 경우 다수의 벌금형 전과는 당연히 가중요소로 참작함이 상당한 점, (2) 명예훼손 범죄의 특성상 상습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의 죄질이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할 때 위 인자를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으로 변경하는

방안 고려

▪ 모욕 범죄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li>○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li> <li>○ 공연성이 없는 경우(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li> <li>○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ul>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가 준상관인 경우(2유형)</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ul>

- ▶ 모욕죄 관련 판결문 다수에서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에 대한 범행을 양형 가중사유로 참작하고 있는 점, 국가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감안하여 '경찰관 등 공무집행 중 공무원에 대한 범행'을 가중인자로 고려함이 상당

다. 대한변호사협회

- 양형기준안에 찬성함

라. 대한법무사협회

- 양형기준안에 찬성하므로 특별한 의견 없음

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양형기준 설정 대상의 검토

-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실제로 공소 제기되는 사건이 적고 벌금형 선고비율이 높아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및 표현의 자유와의 상충 문제로 위헌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하여 범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거나 보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형법 개정 법률안에도 이를 폐지하는 방향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양형인자의 정의 검토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적합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경우를 가중요건으로 삼은 것은 최근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 특히 언어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처벌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경우 피해자의 고통은 매우 크고 이는 회복이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를 가중요건으로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농아자 - 부적합

- 농아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농아자의 경우에도 교육수준 및 기타 환경에 의하여 사물 변별 능력이 충분히 일반인 수준에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농아자라는 사정을 일률적으로 감경요소로 둘 것이 아니라 다소 사물변별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를 다른 감경요소로서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모욕

▶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부요소 부적합

- 양형 기준안이 감경사유로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포함한 것은 적절합니다. 다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의 정의 중 '범행 당시

소수의 사람이 범행현장에 있었던 경우'에 일부 부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욕으로 인해 느끼는 수치심은 범행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숫자보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범행현장에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와 무관하게 단순하게 현장의 인원 숫자만으로 모욕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일부요소 부적합

- 양형 기준안이 가중사유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적절합니다. 다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의 정의 중 명예훼손과 동일하게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포함한 것은 일부 부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욕의 경우 명예훼손과 달리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혐오감이나 증오감의 표현 자체가 이미 모욕죄의 구성요건의 내용임에도 이를 가중요건으로 삼는 것은 모든 경우에 가중을 하는 것에 다름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정 집단, 특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기초한 모욕범죄(Hate crime)에 대한 형량 가중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바, 가중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이를 가중인자로 지정한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와 같은 사유로 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가중 사유라고 판단됩니다.

▶ 농아자 부적합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와 같은 사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바. 사단법인 오픈넷

-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같은 표현 범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 기준 설정은 국제법 원칙 및 기준에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철회되어야 함.
- 이번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안은 다른 범죄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음. 기본 양형을 기준으로, 폭행죄(2월~10월), 협박죄(2월~1년),

유기·학대죄(2월~1년)보다도 높으며, 상해죄(4월~1년6월), 체포·감금죄(6월~1년)와 유사한 수준임.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같은 표현범죄는 행위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행위의 결과가 '인격적, 정신적 피해'로써 그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함. 그럼에도 타인을 말로 비난하는 행위를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신체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와 죄질이 비슷하거나 더 큰 범죄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과도함.

-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말한 사실이 진실임이 밝혀지지 않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비밀비재함. 즉, 엄정한 양형기준이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진실임을 명백히 증명할 수 없는 사회의 각종 고발을 사전적으로 위축시킬 우려가 큼. 시간이 많이 지나거나 은밀하게 행해져 성폭력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미투 고발도, 공인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자 하는 기자들의 보도 활동도, 후에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인하여 크게 위축될 것임.
- 이러한 이유에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는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추세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점을 강조하여 2001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원국들에게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촉구해 왔으며, 이에 따라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은 형사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였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UN 인권위원회는 UN 자유권 규약에 관한 논평에서, 국가는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가장 심각한 사안들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징역형은 적절한 형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였음. 이 UN 자유권 규약은 우리나라도 1990년 4월 비준하여 1990년 7월부터 법률과 동일한 효력으로 국내에 적용되는 규약으로써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 2010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한국 정부에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했음. 또한 위 논평과 특별보고관 보고서 모두 모욕죄와 같이 사실적 주장이 없는 의견 표명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음.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엄정 처벌'을 내세운 새 양형기준안은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음. 양형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의 정신과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을 철회하고 징역형의 선고를 지양하는 방향의 대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 ◆ 유사수신행위범위반범죄 양형기준안 회신 의견

### 가. 대법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가 양형인자 중 특별감경요소와 집행유예 기준 중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에 포함되어 있고, 현행안에서 그 정의규정은 '총 피해액(총 수신액에서 투자자에 대한 환급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약 2/3 이상의 금액에 관해 투자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거나 투자자의 피해가 회복 또는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중 '피해액을 기준으로 약 2/3'로 정한 것은 유사수신행위와 범죄태양이나 보호법의 면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기죄의 특별감경요소인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의 정의규정인 '손해액의 약 2/3'와 같은 취지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피해액의 정의를 '총 수신액에서 투자자에 대한 환급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은 실제 유사수신행위의 재판실무나 다른 범죄군에서 양형인자의 정의 규정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현행 재판실무에서는 유사수신행위를 범한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를 공제금 등 형태로 지급하였거나 범죄 이후 합의 과

정에서 지급한 경우에 총 유사수신액을 기준으로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사수신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소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수만명에 이르는 경우도 많은데, 그 경우 유사수신 총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피해자별로 일일이 환급된 액수를 가리고 이를 공제한 액수를 기준으로 피해 회복 여부를 가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현행안대로 정의규정이 만들어진다면 유사수신범죄 재판의 초점은 유·무죄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실제 환급된 액수를 일일이 따져 보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범행규모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도로 재판기일이 길어지거나 공전되는 일이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다소 지역적인 부분인 일개 양형요소 판별에 재판관계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앞서 본 사기죄의 피해 회복 정도는 '손해액의 약 2/3' 기준인데, 여기서 손해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가 편취액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대판 2000도1899 등)에 따라 외형상의 편취액을 기준으로 2/3 여부를 평가하지 그 중 일부가 대가로 지급되었는지를 고려하여 그 차액의 2/3를 기준으로 피해 회복 정도를 평가하지 않고 있는 것과 대비할 때도 형평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유사수신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죄에서는 총액 기준으로, 유사수신범죄에서는 총액에서 환급된 액수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 회복 정도를 달리 평가하는 것은 동일한 범행을 두고 왜 동일한 양형요소의 판단기준이 달라지는 것인지 합리적인 설명을 하기 어렵습니다.
- 또한 피해 회복 정도를 총액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과 환급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유사수신범죄 과정에서 전혀 수당 등 명목으로 환급하지 않은 피고인을 더 보호하는 이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즉 유사수신범행 과정에서 총액의 2/3 이상을 환급수당으로 지급한

피고인은 다시 이를 공제한 금액의 2/3를 지급해야만 감경요소로 평가받는 데 비하여, 전혀 환급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은 기소 이후 단계에서 총액 기준 2/3를 지급하면 감경요소로 평가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실제 피해 회복의 면이나 범행의 질적 면에서 더 나쁜 평가를 받게 될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양형결과가 생기는 모순을 발생시킵니다.

- 즉, 유사수신액이 600만 원이고 환급액이 0원인 경우 2/3인 400만 원만 회복되면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만, 만일 환급액이 200만 원일 경우 400만 원의 2/3인 266만 원을 추가로 받아 총 466만 원이 되어야 기준을 충족합니다. 환급액이 400만 원이라면 200만원의 2/3인 133만 원을 추가로 받아 총 533만 원이 되어야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즉 환급액이 커져서 실제 피해 규모가 적어질수록, 피고인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선처받을 수 있는 기이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 유사수신총액 기준이 아닌 환급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피해자에게 더 많은 피해 회복이 가능해진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양형요소 평가에 지나치게 과중한 재판관계자들의 시간과 노력이 소모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범행인 사기죄와 정의 규정의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범행 과정에서 환급을 많이 해준 피고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양형결과를 낳는 점 등을 감안하면 환급액 공제 기준이 아닌 유사수신총액을 기준으로 피해 회복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 정의규정의 재고를 요청합니다.
- 유사수신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주로 벌금형이 많은 점을 감안했을 때 징역형 위주의 양형기준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임.

## 나. 법무부

### ○ 형량범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비조직적 범행	- 8월	4월 - 1년	8월 - 2년
2	조직적 범행	- 10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 특별한 의견 없음

○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단순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li> <li>○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li> <li>○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ul>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가담</li> <li>○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li> <li>○ 범행으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li> <li>○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일부 피해회복</li> <li>○ 일반적 수사협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ul>

- ▶ (단순 가담)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부분 관련, 현행 설정안은 유형을 불문하고 이를 감경요소로 두고 있으나, (1) 단순 투기성 유사수신이 아닌 사기성 유사수신의 경우(예: 금융 피라미드 범죄) 그 특성상 회계직원, 단순정리라고 하더라도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례가 다수 있고, 핵심적 주범 외 상당수의 피의자들이 외형은 단순한 가담으로 보일지라도 피해발생의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일률적으로 감경함은 타당하지 않은 점, (2) 특히 비조직적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결과적으로 주도자 외에는 모두 감경대상이 되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점 고려할 때 해당 요소는 일반 감경인자로 하향하거나 2유형에 한정하여 적용함이 바람직
- ▶ (동종 벌금형 전과) 재범률이 높고 대다수 피의자들이 범행 초기 합의 등을 내세워 가벼운 벌금을 선고받으며 재범을 지속하는 점 감안하여

동종 벌금형 전과도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함이 상당

#### 다. 대한변호사협회

- 양형기준안에 찬성함

#### 라. 대한법무사협회

- 양형기준안에 찬성하므로 특별한 의견 없음

#### 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적합
  -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의 보호법익에는 설명자료에 언급된대로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이라는 사회적 법익 뿐 아니라, '선량한 거래자 보호'라는 개인적 법익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회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위해 거래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바, 일견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두 가치의 형평을 조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의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회복된 피해 또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상당한 수준이어야 하고, 이에 '총 피해액 기준 2/3 이상'이라는 기준은 적합해 보입니다.
- 농아자 - 부적합
  - 농아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농아자의 경우에도 교육수준 및 기타 환경에 의하여 사물 변별 능력이 충분히 일반인 수준에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다소 사물변별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이를 다른 감경요소로서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고, 농아자라는 사유만으로 감경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 ○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적합
  -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의 상당수가 인터넷을 통해 홍보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SNS를 통한 투자자 유인이 활발합니다. 인터넷, SNS를 이용하는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투자자 모집이 매우 용이하므로 피

해자수와 피해금액이 대규모로 확장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해당 양형인자를 가중요소에 반영하고 그 정의에 인터넷, SNS를 포함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회신 의견

### 가. 대법원

- 특별한 의견 없음

### 나. 법무부

-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적 범행	- 6월	4월 - 10월	6월 - 1년 2월
2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 8월	6월 - 1년 6월	10월 - 2년6월

- ▶ 특별한 의견 없음

-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단순 가담</li> <li>○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 중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li> <li>○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li> <li>○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li>○ 동종 누범</li> </ul>
일반 양형 인자	행위  행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가담</li> <li>○ 생계형 범죄</li> <li>○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li> <li>○ 진지한 반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ul>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단순 가담)**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부분 관련, 현행 설정안은 유형을 불문하고 이를 감경요소로 두고 있으나, (1) 단순가담이라는 요소 자체가 영업적, 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등 2유형 범행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이지 이를 제외한 일반 범행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점, (2) 주범이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가 많고 대다수 범행에서 인출책 등 가담자들부터 검거되고 있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모든 피의자들이 소극 가담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해당 요소는 일반 감경인자로 하향하거나 2유형에 한정하여 적용함이 상당
- ▶ **(동종 벌금형 전과)** 재범률이 높고 벌금형의 선고비중이 높고 그 죄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동종 벌금형 전과도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함이 상당

**다. 대한변호사협회**

- 양형기준안에 찬성함

**라. 대한법무사협회**

- 양형기준안에 찬성하므로 특별한 의견 없음

**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양형기준

전자금융거래 범죄의 수법은 나날이 조직화, 전문화, 다양화 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일반적 범행과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의 범행으로 구분하여 후자의 형량범위를 높게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고려됩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는 타 범죄와 결합하여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정경제를 파탄으로 내몰 수 있고,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들을 유인하여 공범이 되게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양형인자에 대한 몇가지 보충 의견을

개진합니다.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보충 필요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주범이 범죄와의 연계성이 낮은 타인을 이용하여 공범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범행가담 또는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소극적 공범의 경우 감경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해당 양형인자는 단순가담, 생계형 범죄 등 타 감경인자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부나 노령자, 장애인이 주범에 현혹되어 공범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감경의 필요성이 대출 또는 취업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보다 낮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이 필요합니다.
- 농아자 - 부적합
  - 농아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농아자의 경우에도 교육수준 및 기타 환경에 의하여 사물 변별 능력이 충분히 일반인 수준에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다소 사물변별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이를 다른 감경요소로서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고, 농아자라는 사유만으로 감경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 가중요소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보충 필요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로 인해 보이스피싱 등 후속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최근에는 국제적 연계망을 갖춘 조직적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결과의 불법성이 큰 해당 경우를 가중하여 양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접근 매체의 수와 범죄 수익의 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위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VI.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양형기준의 공개는 양형기준 적용의 투명화, 적정화 및 양형기준 개선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 제6조(양형기준의 공개)

- ①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제20조(양형기준의 효력발생시기)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보게재일 이후의 날을 지정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3. 공개 방법

- 관보 게재(전자관보 및 종이관보)
  - 관보게재 홈페이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게재
- 양형기준 책자 발간

### 4. 추진 일정

- 양형기준 의결 예정: 2019. 3. 25. 양형위원회 제93차 회의
- 관보 게재 의뢰(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범죄	관보게재의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2019. 4. 초순	2019. 5. 초순

## VII. 2019년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추가 제작 및 오픈

### 가. 개요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국민들로 하여금 실제 사례를 기초로 제작된 영상 프로그램에 직접 판사로 참여하여 양형 판단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국민 체험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제작된 체험 대상 범죄군(살인, 절도) 다양화라는 체험자들의 요구에 응답하고자 2018년도에는 국민적 관심도 및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콘텐츠(강제추행, 보이스피싱사기)를 제작

- 사업명: 2019년 국민 양형체험 동영상 제작
- 사업기간: 2018. 9.경 ~ 2018. 12.경 (3개월간)
- 예산: 금 일억일천이십만원(금 110,200,000원)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나. 추진경과

- 2018. 3. ~ 6. '2018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평가 및 추가 콘텐츠 제작방안 연구
- 2018. 7. ~ 8.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2018. 8. ~ 12. 시나리오 작업 및 촬영
- 2019. 1. ~ 2. 재촬영 및 편집 작업
- 2019. 3. 8. 2019년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오픈

### 다. 최종 수정 작업

- 시스템 업데이트 업무 협조(대법원 전산정보국)
- 동영상 재촬영 업무 협조(서울 중앙지방법원)

### 라. 프로그램 홍보('당신은 판사입니다.')

- Youtube채널, 네이버, 다음, 구글에 프로그램 홍보

### 마. 향후 계획(추가제작)

- 2019년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더 나은 품질

의 추가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

- 국민적 관심도 및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범죄군을 선정

바. 보도자료

## 양형위원회,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 『당신이 판사입니다』 추가 콘텐츠 오픈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9. 3. 8.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추가 콘텐츠로 **강제추행범죄와 사기범죄**를 신규 오픈하였음. ⇨ 누구나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에 접속하여 양형체험을 할 수 있음
- 양형위원회는 지난 2018. 1. 2.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제작·오픈하면서 **살인범죄와 절도범죄**를 기본 콘텐츠로 구성하였고, 이번에 **강제추행범죄와 사기범죄**를 콘텐츠로 추가함
- **강제추행범죄**는 휴대폰 매장의 점장이 휴대폰 액세서리를 훔친 10대 여학생에게 노예계약서를 요구하고 얼굴과 손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의 양형을 체험할 수 있고, **사기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가정주부로부터 1,4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의 양형을 체험할 수 있음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국민들에게 실제 사례를 기초로 제작된 영상 프로그램에 직접 판사로 참여하여 양형 판단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
-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민들은 사건 보도 뉴스를 보고 체험전 형량을 선택한

다음, 판사가 되어 사건영상 및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의 변론을 보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얼마인지를 고민하여 직접 판결을 선고하고, 이를 실제 선고된 형량과 비교하는 체험을 하며, 그 과정에서 형법 및 양형기준에 대하여 쉽게 풀이한 설명자료를 통해 형사재판 절차와 양형의 과정 및 양형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

- 2018년 콘텐츠인 살인범죄 및 절도범죄에 대하여 끝까지 프로그램 체험을 마친 참여자는 2019. 3월 현재 약 28,675명(살인 21,605명, 절도 7,070명)
  - 살인범죄의 경우 체험전 9%만이 집행유예를 선택했는데, 프로그램 체험 후 39%가 집행유예를 선택하였고, 체험후 징역 3년~5년(실형)이 29%, 징역 1년6월~3년(실형)이 17%, 징역 5년~10년(실형)이 10%로 나타남 (2019. 3. 현재) ⇨ 통계분석결과 사건 개요만을 보고 극단적 양형(무기징역 등)을 선택했던 체험자가 양형체험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을 한 후에는 합리적인 양형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임
  - 양형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의견이 많았고(별첨), 사법연수원 등에서 중·고등학생 및 교사에 대한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됨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동안 어렵다고만 생각되어 왔던 형사재판의 양형절차와 양형기준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양형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양형위원회도 국민들의 양형체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양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합리적이고 적절한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데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강제추행범죄 양형체험 프로그램 소개]

## 1. 사건 선택



## 2. 체험전 형량 선택


### 사건개요

**“**  
휴대폰 매장 30대 점장,  
휴대폰 액세서리 절도 행위 빌미로  
‘노에 계약’ 운운하며 10대 여학생 추행  
**”**


서울경찰서는 10일 휴대폰 매장의 점장 A씨가 10대 여학생 B양을 성희롱하고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강남구 소재의 한 휴대폰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7천원 상당의 휴대폰 액세서리를 훔친 B양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B양을 매장 인근에 위치한 룸 형태의 식당으로 데려가 노에계약을 작성하게 하고, 손과 얼굴을 만지면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B양은 어머니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B양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 저녁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양을 혼계하는 목적이었으며,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B양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언론이나 기타 미디어를 통해 위 사건을 접하였을 경우,  
적정한 형량이라고 판단되는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 체험 전 형량 선택

- 징행유예
- 벌금
- 징역 1년 이하
- 징역 1년 초과 3년 이하
- 징역 3년 초과 5년 이하
- 징역 5년 초과

**징행유예**란?

선고형이 벌금 500만원 이하,  
징역 3년 이하인 경우, 형의 집행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0조 개정-시행일: 2018.01.07)

**예시** 징역 1년에 징행유예 2년  
 징역 1년 살포 징행유예기간 2년 (X)  
 징역 1년의 집행을 2년동안 유예 (O)

### 3. 사건영상




### 4. 법정공방 및 변론



## 5. 양형심리

보다 적절한 판결을 위해 판사에게 보낸  
탄원서를 확인하고 선고에 참고하세요.



피해자의 어머니

###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아이의 엄마입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 밤, 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보니 평상시 평범하던 아이가 기운이 없고 채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계속 캐물었더니 아이는 낮에 그런 일을 겪었다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기난하게 키운 것도 미안한데, 그런 일까지 겪게 하니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입에 담기도 싫은 말들로 가해자가 아이를 공격해 돌아온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뛰고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7천 원짜리 핸드폰 케이스를 훔쳤다고 노예계약서를 쓰라니요. 만약 아이가 손진한 마음에 응했다면, 아이는 지금쯤 그 사람의 손바닥 위에서 더 끔찍한 일들을 당했을 텐데, 저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이는 남자 어름을 어려워합니다. 어렸을 때 이런 일을 겪은 아이들이 흔히 보이는 증상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해자는 자기가 한 일이 별 일 아닌 듯이 말하는 것을 보고기가 찡합니다. 이게 어떻게 별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재판장님, 부디 가해자가 자신이 한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이었는지 알도록 밝혀주시십시오. 못한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 드립니다.

## 6. 최종형 선고

피고인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십시오.

징역

+

0년

-

벌금

+

0만원

-

집행유예

+

0년

-

여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중동: 청소년에 대한 집단: 강제추행 등)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떠한 요소가 당신의 선고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최대 2개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 가중**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가중**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가중** 상습범인 경우
- 감경**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감경**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감경**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표 보기 >](#)



## 7. 판결결과 확인

사건번호: 강제추행
전체보기



최종판결
성범죄 부수처분

체험자 선고 형량

징역 1년

---

체험 전 선택 형량

징역 1년 초과 3년 이하

**실제 판결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상투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 ②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강제추행 양형기준 자세히 보기 >

## 8. 통계 확인



## [살인범죄 양형체험 결과 통계]



- 살인범죄의 경우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프로그램 체험을 마친 참여자가 2019. 3월 현재 약 21,605명
- 체험전 9%만이 집행유예를 선택했는데, 프로그램 체험 후 39%가 집행유예를 선택하였고, 체험후 징역 3년~5년(실형)이 29%, 징역 1년 6월~3년(실형)이 17%, 징역 5년~10년(실형)이 10%로 나타남 (2019. 3. 현재)
- 통계분석결과 사건 개요만을 보고 극단적 양형(무기징역 등)을 선택했던 체험자가 양형체험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을 한 후에는 합리적인 양형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임

## [2018양형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견(일부 발췌)]

- 실제로 법정에 참여하는 것 같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 그동안 인터넷에서 판결 사례들을 보고 의문이 들던 때가 많았는데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고 한번 결정을 하면 돌이킬 수 없어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실제로 재판의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어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교육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등학교 교사인데요. 법과 정치 수업시간에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많은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만 보이는 사면의 일면을 가지고 판결에 불만을 가진 적이 있는데,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런 체험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감정에 반하는 판결에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미래 법조인이 되고 싶은 학생으로서 매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 검사를 꿈꾸는 고등학생으로서 판사의 중대한 업무를 체험하며 양형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어 이 체험이 너무 값진 것 같습니다. 제가 사건의 실제 형량이란 매우 가깝게 판결해서 뿌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이러한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체험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을 언제나 항상 보러가지는 못하는 학생이기에 이렇게나마 체험하며 꿈에 대한 희망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 법을 잘 몰랐지만 명시된 관련조항들을 보고 진행하니 비교적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확대 시행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듯 합니다.
- 평소 재판과정에 호기심이 많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현장에서부터 검사, 변호사, 최후변론까지 충실한 콘텐츠에 집중하여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양형기준에 대하여 판결전과 판결후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저와 같은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말 정성 들여 만든 체험 프로그램입니다^^참여하는 과정이 무척 재밌었어요 그리고 법적판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어 무척 유익했습니다.
- 양형체험프로그램!정말너무유익했어요 국민들 중엔 저처럼 메스컴을 통해 접하는 판결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그분들 모두가 판결기준에 대해 이해할수 있도록 이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법관련사이트에 누구라도 이용해 볼 수 있도록 체험존을 만들어 더 많은 분들이 체험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피의자 피해자 모두를 생각하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 기사로 볼 때 왜 판결을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재연 연기자 분들의 연기가 훌륭해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재판의 현실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싶습니다. 현역 판, 검사, 변호사 분들이 활약해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양형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대법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좋네요.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해볼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다만, 2가지의 사건보다 좀 더 깊고 다른 사건들(2~3가지)로 채워지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재판, 양형기준, 법률용어에 대한 관심이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법과 국민감정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큼니다. 본체험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괴리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양형기준을 납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주시고, 국민들의 의견 또한 양형기준에 적극 반영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 기사만을 접하였을 때의 양형과 사건의 내막과 양형 기준을 고려하였을 때 양형을 비교함으로써, 흔히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표현되는 일반인의 법감정에 비해 양형이 관대하게 선고되는 이유를 체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널리 알려 우리 사회의 법적인 교양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판사입장에서 검사측과 변호사측 피고인의 말을 모두 들어보니 언론으로만 접했던 자극적인 내용과는 달리 사건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위터의 변호사님께서 올리신 글을 보고 체험을 하러왔습니다 법이란 어떤 것인지 느끼게 되었고 저와는 완전 다른 판결이나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좋은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폰으로도 체험해볼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살인은 분명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임이 분명하지만, 이와 별개로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가에 대한 동기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영상을 봤을 때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유족 및 피고인은 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되는데, 이러한 배경이 참작요소로 적용되지 않은 게 아쉽게 느껴집니다.

-방학을 핸드폰만 만지면서 보내는 학생입니다. 핸드폰만 만지다 이 체험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이 나온다면 좋겠네요^^

-재판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법으로 냉정하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라는 말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판사님들 파이팅입니다

-양형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단순 법조항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피해자, 피고인 모두에게 평등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내 법동아리에서 모의재판 대부분을 작성할 때마다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도움이 되는 양형위원회 최고입니다! 그리고 양형체험 프로그램은 처음 참여하는데, 판결기준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기분이예요! 더 많은 사건을 가지고 단계별로 나눈 다음, 마지막 단계까지 타당한 판결을 내린 사람에게 소정의 상품을 주는 방식으로 구성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 뭔가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진짜 판사 된 것 같은 느낌...? 같은 살인을 저질러도 어떤 상황이나에 따라 굉장히 세밀하게 나뉘어있으니 신기했습니다. 고등학생이지만 법 공부를 미리

해두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영상이 첨부되었으니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다만 영상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국민들의 법 감정이 양형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체험해 사법부에 대한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양형 기준 체험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연한 법 적용도 좋지만 때로는 강력한 처벌이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이나 재벌 등에 대해 법 적용이 일반 시민들과 다른 기준으로 비취질 때와 같은 경우를 좀 해명하는 것도 유익해 보입니다.

## VIII. 新양형기준시스템 오픈

### 가. 개요

- 2010년 개발된 양형기준시스템의 사용자 이용 편의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 필요성

### 나. 시스템 개발 경과

- 2018. 4. 양형위원회의 개발 요청 및 개발 방안 논의
- 2018. 6. ~ 2019. 1. 전산정보국 자체개발팀에 의뢰하여 新양형기준시스템 개발 진행
- 2019. 2. 新양형기준시스템 개발 완료 및 시범운영
- 2019. 2. 25. 新양형기준시스템 정식오픈

### 다. 시스템 개발 내용

- 사건정보의 해당 사건명에 대한 범죄유형 자동선택을 통한 양형기준 시스템 이용 편의성 증대(범죄군, 범죄유형, 적용법조, 양형기준 시행일 등의 자동현출 가능)
- 판결문 작성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판결문 작성 편의 증대 ⇨ 양형기준의 명시적 기재율 제고

### 라. 양형기준 운영점검시스템과 연동을 통한 판결문 검색기능추가 ⇨ 해당사건과 동일 죄명, 동일 적용법조, 동일 특별양형인자가 적용된 사건의 판결문 검색 가능 ⇨ 해당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쉽게 검색 가능

- 양형기준 시행 이후의 법률 개정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함(양형기준 시행 이후 법률이 개정되었을 경우 해당 내용을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 기능 추가)

### 마. 시스템 개발 효과

- 新양형기준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증대(사건정보를 통한 범죄유형 자동선택) + 시스템을 통한 양형기준 형량범위 및 처단형 산출기능 강화 + 판결문 검색기능 및 개정법률 확인기능 강화 ⇨ 형사법관의 양형기준 적용

및 판결문 작성 편의 증대

- 新양형기준시스템의 이용증가를 통한 명시적 기재율을 제고 효과 기대

## IX. 각종의견 접수 및 처리

###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 접수의견

연번	접수일자	의견요지
1	2018. 12. 30. ~ 2019. 1. 24. (동일인:122건)	○ 사생활침해를 일으킨 사람의 법적 처벌을 요구
2	2019. 1. 28.	○ 2019 양형기준 관련 문의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사생활침해를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여 달라는 귀하의 내용은, 형사 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설정·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양형위원회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019. 3. 25. 양형위원회 제93차 전체회의에서 명예훼손, 유사수신 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의결 후 1월 내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9. 7. 경 양형기준 시행과 더불어 2019 양형기준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 서면질의 등 민원 및 회신

### 가. '국민신문고' 게시판

#### ○ 접수 의견

순번	접수일자	질의요지
1	2019. 1. 22.	○ 성범죄자들에 대하여 법적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
2	2019. 1. 23.	○ 민원인이 올린 게시글에 대하여 답변하여 달라는 내용
3	2019. 1. 24.	○ 게시자의 지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가혹하다는 내용과 관련 사건에 관하여 어떤 법조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답변하여 달라는 내용
4	2019. 1. 24.	○ 성범죄자들에 대하여 법적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
5	2019. 1. 30.	○ 게시자의 여동생에게 선고된 형량이 가혹하다는 내용
6	2019. 2. 1. 2019. 2. 7.	○ 무고범죄에 대한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내용
7	2019. 2. 8.	○ 사기죄와 관련하여 그 형량이 너무 가벼우므로, 사기죄의 법적 처벌수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
8	2019. 2. 8.	○ 성범죄 처벌과 관련된 몇가지 요구사항을 언급하며 무고범죄에 대한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내용
9	2019. 2. 14.	○ 살인범죄의 위협성을 우려하며, 그 법적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
10	2019. 2. 14.	○ 판결하는데 있어서 성인지감수성만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내용
11	2019. 2. 18.	○ 무고범죄에 대한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내용

#### ○ 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19. 01. 22. 접수번호 : 2AA-1901-439703)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

- 우리나라 성범죄 관련하여 그 형량이 너무 가벼우므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성범죄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19. 01. 24. 접수번호 : 2AA-1901-472209)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충북제천 신곡동사고 관광버스 연식 문의 등 게시글에 대하여 답변하여 달라는 귀하의 내용은,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양형위원회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19. 01. 24. 접수번호 : 2AA-1901-479531)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 형사재판에서의 법관의 판단 및 재판 결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19. 01. 24. 접수번호 : 2AA-1901-498806)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우리나라 성범죄 관련하여 그 형량이 너무 가벼우므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성범죄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5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19. 01. 30. 접수번호 : 2AA-1901-615283)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 형사재판에서의 법관의 판단

및 재판 결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6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19. 2. 1. 접수번호 : 2AA-1902-014724/2019. 2. 7. 접수번호 : 2AA-1902-066569)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무고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충실히 검토,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7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19. 2. 8. 접수번호 : 2AA-1902-090429)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충실히 검토,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

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8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19. 2. 8. 접수번호 : 2AA-1902-099589)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입니다.
- 무고범죄와 관련한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충실히 검토,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9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19. 2. 14. 접수번호 : 2AA-1902-202306)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우리나라 살인범죄와 관련하여 그 형량이 너무 가벼우므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살인범죄 관련한 양형기준의 검토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0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19. 02. 14. 접수번호 : 2AA-1902-210839)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 형사재판에서의 법관의 판단 및 재판 결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19. 2. 18. 접수번호 : 2AA-1902-269977)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무고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충실히 검토,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나. '국민신문고' 게시판

○ 접수의견

순번	접수일자	질의요지
1	2018. 12. 7.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구급대원 폭력행위를 양형인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요구
2	2018. 12. 26.	○ 민원인은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으로 사기 및 조세범죄의 양형기준과 가석방 및 형집행정지 기준에 대해 답변하여 달라는 내용
3	2019. 1. 3.	○ 민원인은 현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천구치소에 수감중인 피고인으로, 자신에게 선고된 형량이 가혹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내용
4	2019. 1. 10.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게시판에도 반복적인 글을 올리고 있는 민원인으로, 사생활침해를 일으킨 사람의 강력한 법적 처벌을 원하는 내용
5	2019. 2. 14.	○ 민원인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으로 추정되며 마약범죄 양형기준 및 본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서류를 보내 달라는 내용
6	2019. 3. 5.	○ 민원인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으로 마약범죄 양형기준 표를 보내달라는 내용

○ 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소방활동방해죄 양형기준 설정-현재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양형기준안 확정,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양형기준 최종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제6기 양형위원회의 임기(2017. 4. ~ 2019. 4.) 중에



는 신규설정이나 수정작업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기본법위반이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 신규설정 필요성과 시급성을 검토하여, 제7기 양형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설정·수정 대상범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귀청의 의견이 접수된 사정을 양형위원회에 보고하여 양형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수정(양형인자 명시)-현행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상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라는 양형인자는 ‘정의’를 통해 범죄의 특성상 나타나는 다양한 공무상 양태를 반영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언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양형인자의 정의를 둔 취지와 일치하는 경우 가중인자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정의규정에서 구조와 구급을 개념상 구분하고 있으나, 구조나 구급활동에 대한 방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으며(제28조), 소방기본법 제50조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긴급성을 요하는 ‘구급’업무의 경우, ‘인명구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분명히 하는 의미에서 구급의 양형인자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귀청의 의견은 향후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시점에 양형위원회에 보고하여 양형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소방활동 방해는 국민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안전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양형기준을 정비하여달라는 귀 기관의 의견에 관하여는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충실히 검토,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 발간한 「2018 양형기준」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석방 및 형집행정지 기준에 관한 문의는 양형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지 못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 형사재판에서의 법관의 판단 및 재판 결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사생활침해를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여 달라는 귀하의 내용은, 형사 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설정·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양형위원회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5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 발간한 「2018 양형기준」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 형사재판에서의 법관의 판단 및 재판 결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6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별첨자료로 보내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 발간한 「2018 양형기준」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별지]

■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성 명	최 승 원 (崔 乘 元)
	생년월일	1974년 4월 4일생 , 44세
	출 생 지	강원 강릉
	직 업	서울고등법원 판사
	연 락 처	02-530-1114
<b>학 력</b>		
○ 1993. 강릉고등학교 졸업		
○ 1998.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b>주 요 경 력</b>		
○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2001.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 2001. 해군법무관		
○ 2004.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8.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사		
○ 2012. 2. 인천지방법원 판사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겸임		
○ 2013. 2.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겸임		
○ 2014.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6. 2. [現] 서울고등법원 판사		

■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성 명	김 호 용 (金 虎 勇)
	생년월일	1976년 8월 9일생 , 42세
	출 생 지	부산
	직 업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연 락 처	02-910-3152
<b>학 력</b>		
○ 1995. 부산동성고등학교 졸업		
○ 2004.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b>주 요 경 력</b>		
○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2007. 사법연수원 수료(제36기)		
○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2011. 2. 제주지방법원 판사		
○ 2014. 2.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17. 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2017. 7. 미국 듀크대학 교육파견(~2018. 7.)		